

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소관기관 및 부서: 경상북도 재난안전실

2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3년 1월 20일, 이선희 의원 외 11명

나. 회부일자: 2023년 1월 2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

(2023년 2월 1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)

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: 이선희 의원

나. 제안이유

○ 경상북도에서 개최되는 공연·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 및 체육 활동 등의 옥외행사 시 명확한 주최·주관자가 없이 군중이 모이는 행사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

규정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옥외행사 적용범위에 주최·주관자가 없는 행사를 포함하여 규정(안 제3조)
-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(안 제3조의2)
- 주최·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옥외행사 관련부서에서 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5조의2)
- 주최·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를 관련부서의 장으로 규정(안 제6조)

4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황보 석)

가. 조례개정 필요성

- 경상북도에서 개최되는 공연·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 및 체육 활동 등의 옥외행사 시 명확한 주최·주관자가 없이 군중이 모이는 행사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옥외행사 적용범위에 주최·주관자가 없는 행사를 포함하여

규정함(안 제3조)

-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(안 제3조의2)
- 주최·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옥외행사 관련부서에서 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5조의2)
- 주최·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를 관련부서의 장으로 규정함(안 제6조)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금번 「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경상북도에서 개최되는 각종 공연·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 및 체육활동 등의 옥외행사 적용범위에 주최·주관자가 없는 행사를 포함하여 규정하고, 주최·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시 필요한 경우 옥외행사 관련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 할 수 있도록 하며, 안전관리계획 신고의무를 관련부서의 장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전에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통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서
- 개정 취지와 내용, 관련부서 협의의견 반영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다만, 비용추계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우나, 향후 조례안 시행으로 비용수반 사항 발생시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적정규모의

예산이 투입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 재정협의를 필요합니다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: 생략
6. 토론요지: 없음
7. 수정안의 요지: 없음
8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9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